

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725
----------	------

2020년 12월 16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년 8월 11일 김용석 의원의 9명
2. 회부일자 : 2020년 8월 21일
3. 상정일자 : 제298회 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0년 11월 30일 상정·의결(수정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김용석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의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나,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활용의 폭을 확대하고, 진료비 영수증 제출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건강관리비 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함(안 제5조).
- 생활보조비 지원을 50만원으로 상향함(안 제5조제1호).
- 진료비를 건강관리비 지원으로 하고 월 30만원을 월 50만원으로 상향함(안 제5조제2호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조례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등을 확대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생활지원금 등 지원사업 확대 (안 제5조)

- 개정조례안은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¹⁾를 근거로 “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”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²⁾을

1)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(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3.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·결정에 관한 사항

2) 「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」 제4조(지원 대상자)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.

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 생활보조비의 금액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늘리고(안제5조제1호),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3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건강관리비로 월정액 30만원씩을 지원(안제5조제2호)하려는 내용임.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지원사업) 시장은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</p> <p><u><단서 신설></u></p> <p>1.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: 월 30만 원</p> <p>2.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(본인부담금 중 월 30만 원 이내로 한다)</p> <p>3. ~ 5. (생략)</p>	<p>제5조(지원사업) -----</p> <p>-----.</p> <p><u>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을 월 50만 원 이내로 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-----</p> <p>----- 50-----</p> <p>2.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 : 월 50만 원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- 현재 서울시는 총 14명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으며, 이들이 평균연령 91세의 고령임을 감안할 때 서울시 차원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

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임.

- 다만,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조례가 제정된 타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규정과 비교해보면, 개정안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수준이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음.

< 시도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에 규정된 지원내용 >

구분	생활보조비 (정액)	진료비 (본인부담금에 한함)	건강관리비 (정액)	사망조의금/ 장제비(정액)
경기도	월 30만원		월 30만원 이내	100만원
인천광역시	월 30만원	월 20만원 이내		100만원
광주광역시	월 30만원		월 20만원 이내	100만원
경상남도	월 30만 원	월 30만 원 이내		100만원
전라북도	월 30만 원	월 30만 원 이내		100만 원
서울시	(현행)	월 30만 원	월 30만 원 이내	100만원
	(개정안)	월 50만 원		월 50만 원 이내 100만 원

주 : 울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, 피해자 지원 조항은 규정된 바 없음.

-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생활보조비(+월20만원)와 건강관리비(+월40만원) 증액으로, 연간 총 96,000천원의 예산 추가 확대가 필요하므로, 타 시도와의 지원금액(생활보조비 월30만원, 건강관리비 월2~30만원)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음.

※ 현행조례에서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를 지원하도

록 규정하고 있는데, 2020년 기준 실제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개정안에 따라 정액 건강관리비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, 실제적으로는 월 40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것임.

- 한편, 개정안은 단서조항을 신설하고, 정액지원으로 변경하려는 건강관리비를 “50만원 이내”로 규정하여, 추가적인 지원금 수급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대상 등 여타 급여 및 지원에서 탈락될 소지를 방지하고자 하였음.

3 종합 의견

-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들이 평균연령 90세 이상임을 고려할 때, 정액 건강관리비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등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은 타당성이 있고,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가 없음.
- 다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 및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부담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고려하여, 조례시행 시기나 지원규모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요망된다 할 것임.

붙임 .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등 국가 지원 내용
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등 국가 지원 내용

□ 국가 지원 내용

- 지원기관 :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
- 지원근거 :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- 지원내역 : 국비 100% (대일항쟁기 강제동원자 전체)
 - 사망·행방불명 위로금 : 2천만원/1인
 - 생존자 의료지원금 : 매년 80만원/1인
 - 부상장해 위로 : 3백만원~2천만원/1인
 - 미수금피해 지원 : 1엔당 2천원 환산 지원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수정안 요지

1. 수정이유

-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폭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의 복리향상을 위해 실비 진료비를 정액 건강관리비로 개정함은 타당하지만, 예산상의 한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강관리비 지원 금액을 월 5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수정함.

2. 수정안 주요 내용

- 건강관리비 지원 금액을 월 30만원으로 수정함(안 제12조제3항).

VI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725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10월 30일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폭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의 복리향상을 위해 실비 진료비를 정액 건강관리비로 개정함은 타당하지만, 예산상의 한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강관리비 지원 금액을 월 5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건강관리비 지원 금액을 월 30만원으로 수정함(안 제12조제3항).

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월 50만원 이내”를 “월 50만원,
월 30만 원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50만원”을 “30만원”으로
한다.

수정안 조문

현 행	개 정 안	수정(제안)안
<p>제5조(지원사업) 시장은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</p> <p>1.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: 월 30만 원</p> <p>2.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(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로 한다)</p> <p>3. ~ 5. (생략)</p>	<p>제5조(지원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을 월 50만 원 이내로 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----- ----- ----- 50-----</p> <p>2.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 : 월 50만 원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</p>	<p><u>제5조(지원사업) 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을 월 50만 원, 월 30만원 이내로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(개정안과 같음)</u></p> <p>2.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 : 월 30만 원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</p>

음)

음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대
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을 월
50만 원 이내로 할 수 있다.

제5조제1호 중 “30”을 “50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
한다.

2.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 : 월 30만 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지원사업) 시장은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</p> <p>1.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: 월 <u>30만 원</u></p> <p>2.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(본인부담금 중 월 <u>30만 원 이내로 한다</u>)</p> <p>3. ~ 5. (생략)</p>	<p>제5조(지원사업) ----- ----- ----- <u>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을 월 50만 원 이내로 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----- ----- <u>50</u>-----</p> <p>2.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 : 월 <u>30만 원</u>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